

2025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5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푸드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 3. 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푸드테크 분야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및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

□ 사업내용

- (모집대상) 푸드테크 10대 분야* 관련 직무의 미취업 청년**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푸드테크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 10대 분야 : ① 세포배양식품, ② 식물기반식품, ③ 간편식, ④ 삼차원프린팅 식품, ⑤ 식품 스마트제조, ⑥ 식품 스마트유통, ⑦ 맞춤형·특수식품, ⑧ 외식 혁신 서비스, ⑨ 새활용식품, ⑩ 친환경 식품 패키징

** 청년 : 채용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다만, 자원기업이 소재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적용 가능, 복수사업장의 경우 인턴근무지 사업장 기준), 학력제한 없음

- 푸드테크 10대 분야 관련 직무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간제 또는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 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 **체험형 인턴 채용은 지원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 (모집기간) 2025.3.24.(월)~ 2025.4.11.(금) 18시까지 / 3주간

○ (사업기간) 2025.1.1~2025.11.30

- '25.11.30(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단, 여건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한은 aT의 사전 승인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현재 인턴을 고용 중 또는 고용 완료 후('24년 채용 포함) '25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건비 소급 지원 가능(단, 지정 교육수료증 등 정산서류 제출 必)

○ (지원내용)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승인된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시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1인당 월 1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

$$\text{지급액} = \text{월 인건비} \times (\text{휴일을 포함한 당월 근무 일수} / \text{당월 총일수})$$

- [교육비] 인턴의 직무역량 및 기초 소양 능력 제고를 위해 aT에서 지정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1인 최대 2개 과정, 100%) 지원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 (지원규모) 총 60명 내외 / 기업별 최대 6명

* 사업 수요에 따라 기업별 최대 승인 인원 또는 인건비 지원 기간은 신청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고용·지원 제한)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용
고용 제한	참가기업과 체결한 고용 계약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사업기간(참가업체 인턴별 고용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지원 제한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
	인턴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인턴 기간 내 중도퇴사자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운영절차)

① 지원기업 모집/선정	② 참여 인턴 채용	③ 사업 수행	④ 지원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 및 신청 기업 접수(온라인) 계량평가(제출서류) / 비계량평가(선정위원회) 후 최종선정 사업 이행확약서 제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청년 채용(푸드테크직무) 인턴 채용 결과 보고(→aT) 및 인턴 정보 전산 등록(F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인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연수비 지급 - 인턴 교육 수강 (aT) 기업별 채용 /수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인턴십 종료 후 정산 관련 서류* 제출 (aT)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인턴 활동보고서, 인턴/정규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체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세금·4대보험 완납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업 대상 추후 별도 안내)

○ (기타사항) '25년 사업포기 및 최초 승인인원 대비 인턴 채용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또는 선정평가 감점 부과

구분	내용	
평가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사업 포기 (사업 포기 신청서 aT 제출) 최초 승인 인원대비 채용인원 미달 (aT 사전 승인 득) 	△5점
지원 제외	○ aT의 사전 승인 없이 채용인원 변경 또는 사업 중도 포기로 '25년 지원이 제외된 경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푸드테크기업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참가신청서	인감날인본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인감날인본
	푸드테크 사업개요서	-
	사업자등록증 1부	본사 근무 인턴이 아닌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요 (단,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발급분
	23~24년 12월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최근발급분 재무상태표(국세청 발급분)	- 표준재무제표증명
선택 (해당시 제출)	(경합시 우선선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

3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 (심사/발표) 4월 중 * 선정 결과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계량평가(50%), 선정위원회를 통한 비계량평가(50%)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기업경쟁력, 지원분야 적절성 등
-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 선발

<참고>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1 계량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15	13	11	9	7
재무건전성 (15)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15		10		5
일자리창출 (15)	○ 고용인원 규모	고용인원 증가		고용인원 유지		고용인원 감소
		10	9	8	7	6
사업유지기간 (10)	○ 사업유지기간 - 설립일부터의 사업기간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10년 초과	10~6년	5~3년	2~1년	1년 미만
		5		0		
비수도권 (5)	○ 비수도권 소재 여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 경기, 인천권)		
신규업체 (5)	○ 사업 신규 참여업체 여부	'25년 신규 참여업체		기존 참여업체 (포기업체 포함)		
비계량평가 제외	○ 최신년도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합계(50)		총점			(점)	

- 1) 재무건전성 : 신청일자 기준 최신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조표 등)
- 2) 일자리 창출 : (2024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 - (2023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
 - 제출 필요서류 : 고용 종업원 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고용보험료)
 - '24년 신설 사업자는 '24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종업원 고용 확인 시 10점 부여
- 3) 신규업체 : '24년 미선정 업체

②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20	18	16	14	12
기업 경쟁력 (20)	○ 푸드테크 분야의 제품/서비스 및 사업 현황 ○ 향후 사업 계획의 경쟁력, 푸드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20	18	16	14	12
지원분야 적절성 (20)	○ 푸드테크 10분야와 직무의 연관성 * 단순 생산, 영업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직무 지양	20	18	16	14	12
인턴직무 전문성 (10)	○ 채용 예정인턴 직무의 전문성 여부	10	9	8	7	6
선정 제외	○ 계량 및 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60점 미만					
합계(50)		총점			(점)	

※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 ① 농업경영체(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확인 必), ② 비수도권 기업, ③ 재무 건전성, ④ 일자리 창출, ⑤ 사업유지기간 순 특점이 높은 기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푸드테크육성부(☎ 061-931-1475)로 문의바랍니다.

2025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00식품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업종	식품제조	채용 담당자	성명	
			소속	
			연락처	010-0000-0000
본사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푸드테크 10대 분야 중 택1(기업)>

- ① 세포배양식품 ② 식물기반식품 ③ 간편식 ④ 삼차원프린팅 식품
 ⑤ 식품 스마트제조 ⑥ 식품 스마트유통 ⑦ 맞춤형·특수식품
 ⑧ 외식 혁신 서비스 ⑨ 새활용식품(업사이클링) ⑩ 친환경 식품 패키징

<상세 채용계획>

직무	식물프린팅연구	EX) AI 기반 유통시스템 개발	EX) 식물성 대체육 연구	EX) 식품 업사이클링 연구
채용 인원	00명	00명	00명	00명
채용 시기	EX)4월/6월	EX)0월/0월	EX)0월/0월	EX)0월/0월
근무 기간	EX)3개월(0명), 4개월(0명)	EX)0개월(0명), 0개월(0명)	EX)0개월(0명), 0개월(0명)	EX)0개월(0명), 0개월(0명)

본 사업은 인턴 채용(승인)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_____ (인 또는 서명)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_____ (인 또는 서명)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붙임2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 ✓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푸드테크 기업이 승인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청년을 푸드테크 10대 분야 관련 직무 인턴으로 채용 후, 최소 50% 이상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란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확인란
1. 신청 기업은 푸드테크 10대분야 기업입니다.	
2.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참여 근로자(인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대상 근로자는 내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참여 근로자는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6.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참여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해당 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절차로 처벌됩니다.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일확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참여 근로자가 고용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불인정 되어 지원이 불가함을 숙지하였습니다.	
13. aT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p>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선정 이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자한 경우 동일한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업 체 명 :</p> <p>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푸드테크 기업 사업개요서〉

제품/서비스명	(예시) 000제품, 000기술, 000서비스 설명		
기술특징	AI, IOT, 모바일앱을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영양, 헬스, 식생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영양 조합 추진		
참고자료 *별도 첨부 가능	관련 기사, 홈페이지 URL, 제품 브로슈어 등		
사업현황	(예시) 00년 00제품 판매개시, ~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00인증서 보유중		
향후 사업계획	(예시) 00제품개발을 위해 ~연구 및 펀딩, 제품 출시예정, 소비자시장분석 등		
인턴 채용직무	'푸드테크 10대분야' 관련 00직무 수행	비수도권 소재 기업 여부(본사기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 첨부서류 : 1. 푸드테크 기업 사업개요서(붙임3)
2. 사업자등록증(본사, 인턴 실근무 사업장)
3.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4.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5. 2023~2024년 12월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6. 최신년도 재무상태표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당 시)

<참고1> 푸드테크 10대 분야 범위

- ① **세포배양식품**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이나 식물, 균류, 미생물 등의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여 얻어지는 식품
- ② **식물기반식품** : 식물 또는 식물 일부를 주원료로 하여 육류, 해산물, 계란, 유제품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식품
- ③ **간편식** :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포장한 식품
- ④ **삼차원프린팅 식품** :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인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식품
- ⑤ **식품 스마트제조** : 식품 제조 공정에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생산공정의 효율성과 작업의 편리성 등을 증진한 식품 제조방식
- ⑥ **식품 스마트유통** : 식품 유통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
- ⑦ **맞춤형·특수식품** : 개인의 건강 상태, 선호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환자의 질환 예방 및 예후 관리를 위한 식품
- ⑧ **외식 혁신 서비스** : 외식 업종에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조리 기술 또는 서비스
- ⑨ **새활용 식품** : 식품 생산 과정 또는 제조 후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도록 제조한 식품
- ⑩ **친환경 식품 패키징**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 소재 이용 또는 친환경적 설계 기술이 적용된 식품 포장

	경상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전북특별자치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2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광역지자체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2025년 3월 현재)

광역(시·도)	구분	청년나이	근거	
광역시	특별시	서울특별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역시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대구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1항)
		인천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주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2조 1항)
		대전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1장 제3조 1항)	
도	경기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충청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충청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전라남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 3조 1항)	
	경상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